



강의전담전임교원임용규정

[제목개정 2013. 3. 1]

제 정 일	2012.11. 1
개 정 일	2016.10. 1
개정차수	3차
담당부서	행정지원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 강의전담전임교원의 자격과 임용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 강의전담전임교원이라 함은 계약제에 의해 임용되는 교원으로, 강의 및 학생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.

제 3조 (자격) ① 강의전담전임교원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,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. 다만, 예·체능계열 및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할 수 있다. (개정 2013. 3. 1)

②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

제 4조 (임용) 강의전담전임교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

제 5조 (임용기간 및 재임용) ① 강의전담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재임용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재임용할 수 있다. 단, 최초 신규 임용 시에는 임용기간을 1년으로 한다. (개정 2013. 3. 1)

② 강의전담전임교원을 재임용하기 위해서는 재임용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. (개정 2015. 8. 1)

③ 강의전담전임교원의 재임용 평가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,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 (개정 2015. 8. 1)

④ 강의전담전임교원이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말에 당연히 퇴직한다.

제 6조 (계약의 체결) ① 총장은 임용권자로부터 계약 당사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강의전담전임교원과의 임용계약을 체결한다.

② 계약의 내용에는 임용기간, 보수, 재계약에 관한 사항, 의무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.

제 7조 (승진) ① 강의전담전임교원의 승진은 현 직급에서 승진 소요년수에 해당하는 교원 중 승진심사 평가기준에 의해 종합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 (개정 2013. 3. 1)

1. 승진 소요년수 (신설 2013. 3. 1, 개정 2016.10. 1)

직급별	조교수→부교수	부교수→교수
소요년수	6	5

② 강의전담전임교원의 승진심사 평가는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활용하며,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 (개정 2015. 8. 1)

③ 승진 임용 시기는 연 1회 10월 1일자로 한다.

제 8조 (의무) ① 강의전담전임교원은 학부(과)에 소속되어 주당 책임강의 시간 이상을 강의하며, 주당 책임강의 시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다만, 주당 책임강의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

우에는 초과 강의료를 지급하고, 이에 대하여는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강의전담전임교원이 타 대학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

제 9조 (신분보장 등) ① 강의전담전임교원은 계약기간 중 재임용 평가의 탈락,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법인정관과 본교 제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 해당 교과목 또는 소속 학부(과)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본교 제 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되거나 계약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권면직 할 수 있다. (개정 2016.10. 1)

제10조 (처우) 강의전담전임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1조 (준용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정관 및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강의전담전임교원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재임용 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